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 등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80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개요

1.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8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5. 4.
- (3) 회 부 일 : 2026. 5.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II. 검토 의견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효’의 정의를 자녀가 부모 등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10월로 지정되어 있는 ‘효의 달’을 ‘효의 날’로 변경하여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하고, 포상 대상을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 확대하며 표창 외에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u>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u> 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 <u>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u> -----.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u>10월</u> 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9조(효의 날) ----- ----- ----- <u>매월 1일</u> ----- ----- <u>날</u> -----.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u>보건복지부장관</u> 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u>우수자</u> 를 선정하여 <u>표창</u>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u>정부는</u> ----- ----- <u>우수자 또는 효문화 진흥에 이</u>

을 할 수 있다.	<u>바지한 단체</u> ----- <u>표</u> <u>창 또는 포상</u> ----- <u>.</u>
-----------	---

나. 주요 검토 사항

-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5,122만 1,286명 중 1,024만 4,550명)를 넘어서며 UN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그러나 2024년 노인학대현황을 보면 학대행위자 중 친족이 전체 중 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모 부양과 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단위: 명, %)

피해 노인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노인 복지 시설	의료인	
131	3,053	2,082	81	575	42	183	65	125	108	95	7	64	1,243	27	7,881
1.7	38.7	26.4	1.0	7.3	0.5	2.3	0.8	1.6	1.4	1.2	0.1	0.8	15.8	0.3	100

* 자료: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효’의 정의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에서 부모 등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는 효의 개념을 경제적·물질적인 부양이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 등에 대한 존중과 공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가치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부양’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주로 의미하므로 친족 외에 타인에게도 적용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봉양’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음.¹⁾

다만, 현행법상 ‘효’는 단순한 선언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범위와 각종 효행 장려·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정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부양’을 ‘봉양’으로 변경하면서 별도로 ‘봉양’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봉양’이 ‘부양’과 비교하여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는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나 돌봄 등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친족 간의 법적 의무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부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봉양’은 이러한 법률상 부양의무와 구별되는 효행 장려를 위한 윤리적·사회적 개념임을 고려하여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충분히 명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는 것을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효(孝)를 특정한 달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현재 효와 관련된 법정 기념일(월)을 살펴보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효의 달(10월),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10월 2일), 경로の日(10월), 어버이날(5월 8일), 그 외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 등이 있음.

< 효 관련 법정 기념일(월) >

근거법률	법정 기념일(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효의 달(10월)
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의 날(10.2.) / 경로の日(10월) / 어버이날(5.8.)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	가정의 달(5월) / 가정의 날(5.15.)

법 개정으로 인하여 효 의식 변화에 당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효의 달을 폐지하고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할 경우 오히려 기념일이 연간 12일로 기념월보다 축소되고 행정력이 분산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 ‘효의 달’인 매년 10월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효행 관련 교육·홍보 및 각종 기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 이를 매월 반복되는 기념일로 변경할 경우 기념일 지정에 따른 상징성과 정책적 집중도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나아가 효행 장려는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효행 우수자의 포상 주체를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격상하고 표창 대상에 단체를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점과 관련하여, 현재 효행 우수자 포상은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외에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하고 있어 이러한 표창 상황을 법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효행우수자 포상 현황(어버이날 기념식)>

연도	정부포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21	22	1	1	10	10	30
2022	22	1	1	10	10	30
2023	22	1	1	10	10	29
2024	22	1	1	10	10	30
2025	22	1	1	10	10	30
2026	22	1	1	10	10	30

*자료: 보건복지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실제 제도 운영과 법률상 근거를 일치시키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본문에서는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 및 ‘포상’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10조의 제목인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조문의 제목과 실제 규율내용이 일치하도록 제목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중 효의 정의를 개정하고 현행 ‘효의 날’을 매월 1일의 ‘효의 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현행법상 효의 정의에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효와 노인공경은 개념상 구분될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존장에 대한 공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날(10월 2일) 및 경로효친의 날(10월)과 함께 현행 효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임. 다만,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은 현재 어버이날을 계기로 효행자·장한어버이·효행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의 포상제도와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포상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포상 대상을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 확대하는 개정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은 매년 추천기관의 수요를 토대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별 정부포상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한 ‘정부’ 및 ‘포상’이라는 표현은 다른 법률의 포상 관련 규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해당 규정 자체가 특정 정부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의 문언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개정안 중 ①‘효의 정의’를 개정하고, ②‘효의 달(매년 10월)’을 ‘효의 날’로 변경(매월 1일)하는 것은, 각각 ①현행 효행장려법 규정의 효의 정의가 개정안의 취지를 이미 반영*하고 있고, ②효와 노인공경은 구분될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존장에 대한 공경’으로 본다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날(매년 10.2.)’과 ‘경로의 달(매년 10월)’을 ‘효의 달’과 함께 기리는 것이 사회적 관심 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등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행규정)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봉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③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 우수자 포상 및 표창은 현재 어버이날(5.8.)에 “효행자장한어버이·효행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실 상황과 법령 규정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포상 주체로 정부를 명기하고 포상 대상을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효행장려법을 개정하는데 동의
행정안전부	○ 정부포상은 매년 말 추천기관으로부터 정부포상 수요를 제출받아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포상계획을 확정하게 됨 ○ 따라서, 연간 포상계획에 반영되는 정부포상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부포상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개정안의 조문은 ‘정부는 ...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 “포상”은 다른 법률에서도 포상 관련 조항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것이 정부포상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
한국노인 종합복지관 협회	○ 현행 노인복지법 제6조에 의거, 이미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지자체,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이 대규모 기념행사 및 포상을 일괄 추진하고 있음 ○ 10월 ‘효의 달’을 폐지하고,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경우, 기념일의 희소성과 상징성이 퇴색될 우려가 높음. 특히, 노인복지법 제6조의 어버이날(5월 8일), 노인의날(10월 2일), 경로의 달(10월)과 기념일 체계가 중첩될 수 있음 ○ 일선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기념행사를 기획·수행하는 것은 극심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족을 초래하므로 현행 유지가 현실적임

문 의 처

02)6788-5499